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85호)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43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안	1
2.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	2
II . 검토의견	3
1. 탄력세율 조정한도 한시적 확대	3

I. 개 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2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6.
- (3) 회 부 일 : 2025.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2.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4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12. 19.
- (3) 회 부 일 : 2025. 12.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II. 검토의견

1. 탄력세율 조정한도 한시적 확대(정희용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현 행	정희용의원안	송석준의원안
☐ 과세대상과 세율(제1조) ○ 과세물품의 세율(제2항 제4호) - 휘발유 및 유사 대체유류: 475원/L -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 340원/L - 등유 및 유사 대체유류: 90원/L - 중유 및 유사 대체유류: 17원/L - 석유가스 중 프로판: 20원/kg - 석유가스 중 부탄: 252원/kg - 천연가스: 12원/kg (다만, 발전용 외는 60원/kg) -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90원/L - 유연탄: 46원/kg ○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제7항)	☐ 유류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 (현행과 같음) ○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제7항)	☐ 유류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 (현행과 같음) ○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제7항)

* 정희용의원안 2025. 12. 16. 발의(의안번호 15285), 송석준의원안 2025. 12. 16. 발의(의안번호 15435)

□ 2건의 개정안은 개정안은 각종 유류와 유연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정희용의원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송석준의원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구 분	탄력세율	적용기한
현 행	+30 ~ △30%	
정희용의원안	+50 ~ △50%	2027년 12월 31일
송석준의원안	+50 ~ △50%	2026년 12월 31일

□ 현행 「개별소비세법」¹⁾은 리터당 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 등유 90원 등 각종 유류와 유연탄의 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의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6.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30%(탄력세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²⁾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³⁾한 나머지 유류와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 유류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수송용 연료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 인하한 234원/kg의 세율을 시행하였고, 최근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발표⁴⁾하였음.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세율 비교]

구분	「개별소비세법」상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
휘발유	475원/L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경유	340원/L	
등유	90원/L	63원/L
중유	17원/L	-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 5. (생략)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3) 휘발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4) 기획재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2025.12.23.

구분		「개별소비세법」 상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 탄력세율	
석유가스 (LPG)	프로판	20원/kg	가정 · 상업용: 14원/kg	
	부탄	252원/kg	275원/kg	
			220원/kg (2021. 11. 12. ~ 2022. 4. 30.)	
			193원/kg (2022. 5. 1. ~ 2022. 6. 30.)	
			176.4원/kg (2022. 7. 1. ~ 2024. 6. 30.)	
			193원/kg (2024. 7. 1. ~ 2024. 10. 31.)	
			212원/kg (2024. 11. 1. ~ 2025. 4. 30.)	
	234원/kg (2025. 5. 1. ~ 2025. 12. 31.)			
천연가스(LNG)		발전용: 12원/kg	일반 발전용: 12원/kg	10.2원/kg (2025. 12. 31.까지)
			열병합 발전용: 8.4원/kg	
		발전용 외: 60원/kg	발전용 외: 42원/kg	
			수소제조용: 8.4원/kg	
부산물		90원/L	63원/L	
유연탄		46원/kg	39.1원/kg(2025. 12. 31.까지)	

□ 이와 같이,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유가의 상승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2건의 개정안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40%~50%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최근 국제유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유가는 2025년 12월 기준 휘발유 1,740.2원/L, 경유 1,650.5원/L, 실내등유 998.1원/L

로 유류비가 2023년 이후 꾸준히 상승⁵⁾함에 따라 함에 따라 가격
 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안과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확대함으로
 써 유류비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휘발유와 경유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
 는 유류 중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와 취사·난방용으
 로 쓰이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 자동차용 연료인 석유가스 중 부탄
 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
 담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와 같이 탄력세율 확대 조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감
 면될 경우, 부가세(surtax)인 교육세⁶⁾와 부가가치세(10%) 역시 감
 면되므로 국민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함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의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주유소 휘
 발유 판매가격은 1,740.2원/L, 경유 판매가격은 1,650.5원/L,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998.1원/L으로 나타남.
 (단위: 원/L)

유종	22년	23년	'24년	'25.9월	10월	11월	12월
보통 휘발유	1,812.8	1,643.0	1,646.7	1,659.9	1,663.2	1,718.1	1,740.2
자동차용 경유	1,842.9	1,558.3	1,502.7	1,530.7	1,536.8	1,619.1	1,650.5
실내등유	1,473.9	1,403.0	1,344.8	1,295.2	999.1	998.3	998.1

6)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등유, 증유, 석유가스 중 부탄, 부산물유류의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5%가 교육
 세로 부과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탄력세율 조정으로 세율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액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에 세율(탄력세율이 규정된 품목의 경우 탄력세율)을 곱하여 도출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상향하여 인하폭을 확대할 경우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둘째, 탄력세율은 헌법⁷⁾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정세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세율임⁸⁾.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의 경기조절기능 등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30%⁹⁾에서 확대하

7)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8) 현행 조세법률에서는 탄력세율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일부 개별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탄력세율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9) 舊 「특별소비세법」 제정(1977. 7. 1. 시행) 당시부터 현행 「개별소비세법」 까지 탄력세율 100분의 30 범위

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세율결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¹⁰⁾

□ 따라서, 유류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에 따른 물가 안정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정부의 재정 여건,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 확대 여부와 확대 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법」과 마찬가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¹¹⁾하고 있음.

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음.

10)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과세요건,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나, 복잡다양하고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헌법 제75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판시한바 있음. → [舊 「소득세법」 제60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병합))

1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률 간 정합성과 유종(油種)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탄력세율 조정 한도와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¹²⁾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12) · 정회용의원안(2025. 12. 16. 발의, 의안번호 15282):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2027년 말까지 30%→50%)
· 송석준의원안(2025. 12. 19. 발의, 의안번호 15439):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2026년 말까지 30%→40%)